

[별첨#4] 입주심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통하여 승인이 필요한 사항

가. 식료품제조업 및 연관업종

1) 식료품 제조업(C10)

구 분	종 류	입 주 업 종(한국표준산업분류)
식료품 제조업(C10)	곡물 가공품 제조업	10511. 곡물 도정업 10512. 곡물 제분업
	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	10520.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
	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	10901. 반려동물 사료제조업

2) 음료 제조업(C11)

구 분	종 류	입 주 업 종(한국표준산업분류)
음료 제조업(C11)	발효주 제조업	11119. 기타 발효주 제조업(청주제조업 포함)

3) 연관산업(C17, 21, 25)

구 분	종 류	입 주 업 종(한국표준산업분류)
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(C17)	펄프, 종이 및 판지 제조업	17105. 크라프트지 및 기타 상자용 판지 제조업
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(C21)	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	21100.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
금속가공제품 제조업(C25)	그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	25991.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

나. 물류시설용도 유치업종

- 1)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물류시설을 영위하기 위한 식품 관련 물류사업
- 2) 분양공고 시 별도 절차를 통하여 추진 할 수 있음

다. 연구시설용도 유치업종

- 1) 식품산업에 부합한 지식산업·연구개발업 및 연구시설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
 - 가) 식품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
 - 나) 식품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·운영하는 기관
 - 식품관련 연구기관
 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그 부속연구소
 - 연구기관(식료품, 음료 또는 연관산업 개발과 관련된 기관)
 - 정부출연기관 : 식료품, 음료 또는 연관산업 개발과 관련된 기관
 - 기타 관리권자가 「산업집적법 시행령」 제6조 제7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등

라. 임대업 유치업종

- [별첨#3] 외의 업종은 입주심사위원회 사전 심의 대상임